

원로스카우트 규정

(제9차 개정 2022. 4. 28., 전부개정 2009. 2. 12.)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정관 제19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원로스카우트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본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한국스카우트연맹 내에 둔다.

제4조(목적) 원로스카우트로서 긍지와 품위를 유지하여 모든 스카우트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도록 자율적인 활동으로 스카우트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2. 스카우트 활동을 위한 지원
3.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중요 시책에 대한 자문
4. 연찬회 개최
5. 원로스카우트 회보 발행(교수회보와 함께)
6.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6조(자격기준) 정관 제31조제1호에 의거, 이사회에서 원로스카우트를 추대함에 있어 다음 제1호 및 제2호 공히 연차등록을 필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로서 75세 이상인 자이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재가 추대한다.

1. 지방·특수연맹장의 추천으로 공문을 통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스카우트 지도자로 30년 이상 봉사하였고 훈련교수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 훈련교수 활동을 하였으며 무궁화 금장 및 봉사대장(봉사장)을 수상한 자라야 한다. (개정 21. 2. 4.)
2.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임원으로 8년 이상 봉사한 실적이 있는 자로 지방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추천된 자. (개정 21. 2. 4.)

제7조(자격 및 임기) 원로스카우트는 명예임원으로 종신직으로 한다.

제8조(임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1. 2. 4.)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4인(수도권 1명, 전라도 및 제주 1명, 충청도 및 강원도 1명, 경상도 1명)(개정 22. 4. 28.)
3. 상임위원 22인(각 연맹별 1명씩 추천)(개정 22. 4. 28.)
4. 감 사 2인(수도권,지방)(개정 21. 2. 4.)
5. 총 무 1인(수도권)(개정 21. 2. 4.)
6.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직전 회장을 당연직 상임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1. 2. 4.)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상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 12. 18.)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 12. 18.)
3. 상임위원은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한다.
5. 총무는 본회의 회무를 관리한다. (19. 12. 18.)
6. 당연직 상임고문은 상임위원회와 회장단 회의에 참여하여 지도, 조언한다. (신설 21. 2. 4.)

제10조(임원 선출) (개정 21. 2. 4.)

1. 회장 및 부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위원은 각 연맹별로 1명씩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3. 당연직 상임고문은 임기 말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1조(임원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신설 21. 2. 4.)

제12조(임원 보선) 본 회 임원이 그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보선한다.

1.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19. 12. 18.)
2. 상임위원의 결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보선한다.
3.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총재가 소집한다. (개정 21. 2. 4.)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재와 협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19. 12. 18.)

제14조(총회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원로스카우트규정의 개정
2. 임원 선출
3. 업무보고 및 예산·결산 보고
4.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

제15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본 회 상임위원회 구성은 제8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회의) 본 회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임위원회를 소
집한다. (개정 19. 12. 18.)

제17조(상임위원회 기능) 상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심의
3. 총회 안건 결의
4. 회원의 연회비 책정 심의

제18조(성원 및 의결) 총회와 상임위원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정하고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개정 21. 2. 4.)

제19조(회원의 의무) 본 회 회원은 입회비 및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규정
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1. 2. 4.)

제20조(회원자격유지와 자격상실) 본 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전체 스카우트
지도자의 원로가 되며 사표가 되도록 힘쓴다. 다만, 연회비 2회 이상 미납하거
나 총회 2회 이상 불참 시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다시 참가를 원할 때
에는 제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하도록 한다. (신설 21. 2. 4.)

제21조(재정 및 회계)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
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1. 2.
4.)

제22조(지방원로스카우트회 설립) 본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특수연

(원로스카우트 규정)

맹 단위로 원로스카우트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원로스카우트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원로스카우트회에 위임한다. (개정 09. 11. 13.)

제23조(효력) 본회의 규정은 연맹 이사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며 개폐는 본회 총회의 결의와 연맹 이사회의 승인으로 유효하다.

제24조(기타) 본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의 정관·헌장 및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84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9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7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21년 2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